

2023년도 2차 생통포럼

#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정착을 위한 민·관의 역할 및 과제

---

일시 : 2023. 11. 28 [화] 오후 3시

장소 : 전일빌딩245 시민마루(4층)

---

□ 주최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예총, 상상실현네트워크

□ 협력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문화예술분과



## ■ 프로그램

구분	토론자
사 회	- 이기훈(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발 표	- 김성배(광주광역시 문화정책관), 엄수경(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이야기 손님	- 이현미(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무처장)    - 조인형(광주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정두용(상상실현네트워크 공동대표)            - 심재형(예비 예술인) - 백승현(대동문화재단 출판미디어본부장)

## ■ 목 차

1. 발 표(1)	김성배 광주광역시 문화정책관 -----	07
2. 발 표(2)	엄수경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	13
3. 패 널(1)	이현미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무처장 -----	21
4. 패 널(2)	조인형 광주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25
5. 패 널(3)	정두용 상상실현네트워크 공동대표 -----	27
5. 패 널(4)	백승현 대동문화재단 출판미디어본부장 -----	33
5. 패 널(5)	심재형 예비예술인 -----	35



# 발표문



#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정착을 위한 민·관의 역할 및 과제

김 성 배(광주광역시 문화정책관)

## 1. 제도 도입 배경 및 의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방지와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법령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예술계와 국회, 정부가 협력한 결과, '22.9.2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됨('21.9.24. 제정)에 따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는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그동안 예술 관련 법령이 예술 분야별 지원체계 마련에 집중하거나 예술가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다룬 것과는 달리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커져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폭넓게 보장되었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까지도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시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른 조례안 마련 및 예술인 권리보장 정책 발굴 등을 위해 '21.12, 예술인·민간전문가·시민단체·언론·시의회·시 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치 T/F>를 구성하였다. '22.1.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3.1.까지 총 10회의 T/F 회의가 개최되어, 조례안 내용에 대한 예술인과 의회, 지자체의 심도있는 논의 과정 끝에 마침내 '23.2.23.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다.

## 2. 예술인권리보장법 도입 후 제도 변화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예술인 권리구제기구의 설치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유계약자가 대부분인 예술인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등 기존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법을 통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이 보호를 받게 됐다.

아울러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예술대학 학생 등 상대적으로 권리 보호에 더 취약한 예비예술인 등도 권리 침해행위와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했다. 예술 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조하고 예술인과 다른 직업과의 동등한 지위 보장을 선언했으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예술 정책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규정했다.

먼저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예술인

의 권리침해 행위를 유형화하고 금지했다. 예술인의 예술 활동과 성과 전파의 방해, 예술지원사업에서 성별·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차별을 목적으로 한 명단 작성·공정 심사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예술인과의 불공정한 계약 등 불공정행위와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도 금지 대상이다.

예술인은 예술 활동 또는 교육 활동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예술 활동·교육 업무의 지휘·감독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문체부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의 수립,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예방교육 실시 등을 수행해야 하고, 2년마다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발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3.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조례 도입 후 과제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가 발의되기까지 김나운 시의원과 시 문화체육실, 광주문화재단, 예술인 등으로 구성된 조례 제정 TF가 1년여간 운영돼 왔다. 모두 10여 차례 회의와 공청회 등을 진행했으며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광주문화재단과 TF 공동 주관으로 집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조례안의 필요성은 지난 2021년 7월 김나운 의원실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당시 시의회와 광주시, 문화기관, 예술인들이 모여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연장선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해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조례에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2년마다 수립·시행 ▲예술인권익지원센터 설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을 위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심의위원회 설치 ▲예술사업자·예술지원기관·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예술인권리침해 예방교육 연 1회 실시 ▲예술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또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22년 12월에 발표한 2023-2025 광주예술인 복지지원계획 수립 연구에 따라 광주예술인복지지원 비전 및 추진전략, 추진과제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예술인 상담 및 권익교육 지원 등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일부 포함하였다.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향후 계획수립 시 권리보장 내용을 더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점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추천, 문화·예술 분야 활동 경력자, 또는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의 지속적인 위원회 정비 지침 통보에 따라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에서 예술인 권리보장 및 복지 지원 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자문, 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성희롱·성폭력·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그 대상이다.

우리 시는 올해 3월, 예술사업자·예술지원기관·예술교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예술인권리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들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6월 광주 연극계는 성폭력 사건으로 잡음이 일었다. 또한 2020년에는 광주 시 산하 공공예술단에서 예술인 노동인권침해 사례 등이 발생해 시의회는 예술인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이밖에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실태조사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돼 있다.

우리 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정책 및 관련 법령 등을 통해 지역 예술인이 안정되고 공정한 환경 속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향후 정부 시책 등과 발맞춰 우리 시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인 권리보장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여 예술인의 든직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4.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우리시 추진사업

우리시는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해 문화재단 내 예술인보듬소통센터를 두고 ▲예술인상담실[ON:결에]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 연계지원 ▲예술인 대상 아카데미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예술인이라면 artbodum.or.kr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1 맞춤 컨설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환경 개선 및 각 분야 전문성 향상을 돕고, 불법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먼저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예술인 전문 컨설턴트의 프로필 및 활동경력을 확인한 후 온라인 상담 또는 오프라인 원데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분야는 예술기획, 공연창작·실연, 전시창작·실무, 창업·단체설립, 세무·회계, 법률, 노무 등 매우 다양하다.

권리침해를 받은 예술인은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 02-3668-0200)에 신고할 수 있다. 우리시 예술인보듬소통센터는 예술활동증명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하고자 하는 지역예술인에게 법률자문단(전문기관) 연계부터 신고, 후속조치까지 지원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보듬소통센터는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심리건강연구소, 최영미마음상담센터 등 다양한 민간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연계 협력 중이다.

또한, 급변하는 트렌드에 대비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창업, 창작기획, AI와 예술, 계약, 저작권 등을 주제로 예술인 대상 아카데미를 꾸준히 실시한다. 10월말까지 약 200여명이 수료하였으며 연말에는 약 300여명까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역대급 경기 불황으로 세수 감소라는 난관에 맞닥뜨렸지만 예술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우리시는 적극적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민관협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앞으로도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 정착을 위한 민·관 역할과 과제

엄수경(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 1. 들어가는 말

지방 자치 단체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가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를 2023년 2월 23일 제정했다. 우리나라 예술 관련 법령은 그간 장르 중심으로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예술인으로서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은 부족했다. 광주광역시가 예술인을 위해 제정한 조례에는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민간 예술단체, 예술가, 전문가 사이 중간 조직으로 구성된 ‘민·관 협치 특별전담팀’이 2022년 1월에 구성되어 2023년 1월까지 운영됐다. 그동안 열 차례 내부 토론회와 현장 예술가들 집담회, 조례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거쳤다. 광주광역시는 민주·인권·평화 도시답게, 예향 광주답게, 예술을 하기 좋은 도시구현에 필요한 기본 조치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선구적 역할을 했다는 호평이다. 과연 이러한 평에 걸맞은가? 자화자찬하는 것은 아닌가 반문하게 된다.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구제와 권익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기구인 “예술인권익 지원센터”는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조례란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으로 임의성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갖는다. 최악 상황에서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조례는 두루뭉술하다.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 제정 배경이 된 것은 광주광역시립극단 문제이기도 했다. 성희롱, 갑질, 불공정 계약 의혹, 각종 부조리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예술계 환경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 직업적 권리, 표현의자유 침해 또한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예술인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현장 지역 예술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명문화가 필요하다.

광주광역시나 광주광역시의회가 가해 기관이 되었을 때는 문제 해결 어려움은 더

욱 커질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 조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 길잡이로서 기능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예술인 지위와 권리에 대한 사항을 보호하는 조례는 70여 개가 넘는다. 수많은 조례가 법령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실무적 지침이 되어 있지 못하고 형식적 규정에 머물러 있는 까닭에 실제 작동도 하지 않고 잠자고 있게 된 것이다.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한 이후 주변에서는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고 한다. 행정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문화예술계와 개인 예술가도 반성할 일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 자신조차도 조례에 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예술인으로서 지위와 권리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보장받고 어떤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모른다.

## 2. 예술인 권리침해 발생,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 역할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가 2023년 2월 23일 제정됐다. 조례 제1조 목적에는 광주광역시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 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예술가들은 아니 나는, 내 분야에서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할 때 해결 방법이 있는 걸 알고 있는가? 부당한 사건이 터지기 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른다. 억울할 때 해결책으로 그곳을 회피하고 떠나버린다. 이러한 현상이 나뿐이겠는가? 이제는 자신 상상력을 제재당하거나 빼앗길 때, 성희롱과 성폭력에 노출되더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고 예술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실 부당함에 고소하고 싶어도 2차 가해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두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좁은 바닥에서 혹시 소외당할지도 모르고 이상한 소문과 오해, 무엇보다도 문화예술계에서 부정적 평판이 퍼져 다음 일을 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렵다고 했다.

조례는 다양한 법안과 연동되어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예술 활동 중에 발생하는 반인격적 행위 모두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시정 조치 요구에서 처벌까지 다양해졌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현재 제정된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 또한 실효성이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명확하게 명문하지 않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영역이 내용과 방식에서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조례는 집행과정에서 근거가 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현장에 있는 예술가로서 예술인 노동과 복지, 예술인이 육체적 노력과 정신적 노력을 들인 행위인 노동으로 얻게 된 복지가 있다. 과연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인가, 이와는 거리가 멀다. 경제적이란 단어 앞에서 역시 막막하다. 예술가들이 월 최저금임에 미치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경제와 관련해서 특히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 자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누구 탓을 하느냐고 한다면 할 말은 없게 된다. 막노동이라도 해서 먹고사는 걸 해결하라! 예술가는 게으르다, 자기 삶을 책임지지 않는 무능력자라고 까지 말이다.

문화예술은 사회 구성원 의식 수준을 고양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 전반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여 일반인들이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한 사회나 국가 예술 수준이 해당 사회 역량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예술은 사회를 통합하고 교육으로 깨우쳐 이끌어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개인과 사회 정신적인 면을 풍요롭게 만든다. 우리나라 역시 예술 순기능에 주목하여 예술진흥을 위한 노력이 정책적으로 꾸준히 추진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지속해서 증가해 왔으며- 현재는 역주행 중- 전국에 각종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고 많은 예술단체도 만들어졌다.

예술인 창작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 11월 17일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제정은 특정 직역(職域-어떤 직업이나 직무 영역이나 범위)에 대해 시행되는 복지 관련 법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제고하고 예술인을 위한 복지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예술인복지법」은 헌법 제9조에 문화국가 원리를 구현하는 기초적인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예술인이 예술 활동에 종사하면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의의를 평가받고 있다고 되어 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은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가난에서 예술이 나온다’라고 오해했다. 가난을 예술로, 작품으로 승화시킨다는 의미로 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정

당화했다. 젊은 예술가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홀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다.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월평균 최저임금 기준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이렇듯 예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얻으므로 예술 활동을 노동으로 바라보고 이에 알맞은 경제적 비용 지급과 지위 보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 또한 '노동자'다. 예술인이기 때문에 가난해야 하는 것이 아닌 예술인도 국가의 한 국민으로 보호받고 경제적 안정과 생활에서 만족감을 누릴 권리가 있다. 예술인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복지국가 역할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예술인 복지국가인가?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다르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 경우 예술인활동증명이 필요하고 신청했을 때 선정되기까지 2개월 이상이 걸린다. 현재 광주문화재단 예술인보듬소통센터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문화예술이 기본 근간인 문화국가시대 도래로 문화예술 가치 급변과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사회·경제적 변화와 발전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문화예술 향유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 관한 관심이 높다. 문화예술 분야 발전이 국가 위상 정립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에 따라 정부는 문화융성 시대에 발맞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 생산 주체자인 예술인 사회적 지위 인식과 경제적 상황은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예술인복지와 열악한 예술 창작환경 문제는 지속해 제기되어 온 문제다. 예술인 노동 특수성과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예술인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조명과 국민 기본 권리인 보편적 복지 개념을 바탕으로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 사회적 안전망 제공은 필수적이다. 문화예술 분야 생산 주체자는 예술인들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들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진정한 문화복지 실현과 문화예술 수준 제고의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는 2003년 故 구본주 조각가 교통사고 보험 소송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 사회적 지위와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故 구본주 씨 죽음에 대해 삼성화재가 주장하는 것은 교통사고사 과실 범위, 작가 가동연한(정년), 수입 산정 문제였다. 보험금 때문에 작가 예술성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피해자 잘못 70% 주장은 구본주 씨를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었다.<sup>1)</sup>

---

1) "예술계에서 그의 죽음은 커다란 뉴스입니다. 이제 막 그의 작품이 만개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국 미술계의 큰 슬픔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도 자기 과실을 인정했는데, 삼성화재가 뒤집겠다고 나섰습니다.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죠. 다른 예술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만한 예술가

2011년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가 생활고로 사망하는 사건을 정점으로 일명 최고의 법으로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복지지원 정책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했다. 예술인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구조 형태에 있는 예술인들 복지 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 개입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인 지위와 권리 침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예술계 요구에 따라 2021년 9월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예술 관련 법령은 그동안 장르 중심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중되었다.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는 시장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성희롱·성폭력 발생이 발생할 때 실질적 피해구제 기구(예술인 권익지원센터)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예술인 지위와 권리 신장에 상당 부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광주시립극단 단원들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술인권익지원센터’가 임의규정이다 보니 실효성 면에서 불투명하다. 예술인들과 적극 소통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더 나아가 시민들도 양질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예술인권리보호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하거나 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때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가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불공정 행위 이외에도 표현의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까지도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예술인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 문화생과 같은 예비예술인도 법 보호를 받는다. 작가 문화생과 같은 예비예술인이 예술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예술가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서류 작성에서 자신의 창작작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지 목적과 기획 의도, 추진 배경, 필요성, 구체적인 내용과 주제, 개념, 행사구성, 홍보계획과 관객 모객 계획, 예산 내역, 사업 성과와 해당 분야 파급효과, 향후 발전방안까지 작성해야 한다. 예술가가 창작활동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

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우리들은 개 값도 안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적어도 삼성한테는."

그랬다. 삼성화재는 故 구본주 씨의 사고사를 자살로 만들었고, 촉망받던 예술가를 백수로 몰아세웠다. 또 예술가의 정년을 임의대로 산정했으며, 조각가로서의 경력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고 소송을 벌였다.

문화예술 분야 발전이 국가 위상 정립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 3. 마치며

예술인이기 때문에 가난해야 하는 것이 아닌 예술인도 국가의 한 국민으로 보호받고 경제적 안정과 생활에서 만족감을 누릴 권리가 있다.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예술인은 성 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예술인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수행하는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지원이 절실한 예술가들에게 지원기관은 권력화되어서는 안 된다. 예술인들 권리와 지위를 고려하기 보다는 선명한 지원신청서 작성과 무탈한 행정절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 집행이 벗어나야 한다.

광주광역시 조례가 민주·인권·평화 도시답게, 예향 광주답게, 예술을 하기 좋은 도시구현에 필요한 기본 조치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선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받은 것처럼 실효성 부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예술인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떠났던 예술이 다시 돌아오는 문화예술 도시로서 면모를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광주가 무슨 문화중심도시여?

지방 자치 단체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가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광역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행보는 문화예술인 각자 몫이다.

타  
는  
사  
의  
의



# 예술인권리보장 조례 제정 및 정착을 위한 과제

이현미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무처장)

## 1. 조례의 제정과 조례의 태생적 한계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로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예술관련 법령은 그간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운동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불공정한 예술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예술계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21년 9월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우리시의 경우도 그간 문화예술단체 단원들의 성희롱, 갑질 피해 호소와 불공정 계약 의혹 등 각종 부조리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폐쇄적인 예술계 환경을 감안할 때 드러나지 않는 문제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며, 따라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함.

본 조례안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보호]를 조례로 규율하여 예술인의 활동과 관련한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신장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인권익지원센터나 심의위원회의 구성,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 처리와 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실태 조사 등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있어 조례가 형식적인 규정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리침해행위 방지뿐 아니라 권리침해행위 발생 시의 구체적인 구제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보임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중)

## 2. 예술인이 우리 사회에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법으로 보호하는가?

예술인의 역할 :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 사회 영역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을 창조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장 제4조)

## 3. 예술인권리보장법 정착을 위한 한 걸음

예술인권리보장법과 복지법을 혼용하여 이해하거나 행정 편의상 두 법의 심의위원회 통합운영하자는 의견에 대해 두 법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권리보장법 정착을 위한 한 걸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예술인복지법 비교

구분	권리보장법	복지법
시행일자	2022.09.25	2012.11.18
목적	예술창작, 표현의 자유 보호 노동과 복지등의 직업적 권리 신장 문화, 사회, 정치, 경제적 지위보장 성평등 예술환경 조성 예술인의 예술정책 결정 과정 참여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복지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증진
대상	예술인(전문예술인, 예비예술인)	예술활동증명한 예술인
주요기구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예술인 보호관(조사, 시정 등) 심의위원회(심의 및 의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다른법률과의 관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다르다.
조례주요기구	심의위원회 예술인권익지원센터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관정 합동의 조례 TF팀이 가장 중점으로 다룬 것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광주형 조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 구체적인 조항으로 예술인권익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었고, 핵심 사안이므로 강제 규정으로 두려

시도하였으나 행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빠른 조례 제정으로 2023년도부터 활동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기약하며 임의조항으로 합의하였다. 그러함에도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성과 외에 구체적으로 이뤄진 내용이 없다. 예술인 표준계약서 보급, 법률상담 컨설팅,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권리보호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나 거의 복지법에 근거해 문체부와 문화재단 보듬소통기관에서 기 진행되는 사업이다.

후속조치를 실행할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사유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조례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광주광역시 예술인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보면 미첨부 근거 규정(의안 비용추계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표기되어 있고, 비용 추계안 미첨부 사유에는 지원사업, 성희롱·성폭력·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 실시, 실태조사 등에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원 대상 및 소요 금액을 현시점에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 문화예술진흥팀)

조례제정까지는 민관정의 거버넌스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후속조치는 전적으로 행정이 주도해 나가는 과정이다. 시장은 지원계획(목표, 추진 방향, 관련사업추진, 시책개발, 재원조달등)을 2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강제조항), ‘광주광역시예술인지위와 권리 보장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을 받을수 있게 하였으나 시장을 도와 지원계획을 만들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복지심의위원회와 통폐합하여 운영하자는 의견만 제시되고 있다.

예산이 수립되고, 예술인권리보장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장이 적극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심의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예산의 한계와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통폐합한다는 행정의 입장은 찬성한다. 다만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 복지법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한걸음이 될 것이다.

예술인 복지법은 최고은 작가가 굶어 죽자 만들어진 법안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국가가 피해를 만들고 거센 저항에

의해 만들어졌다. 우리는 누군가가 죽거나 다치고 피해를 입어 수많은 생을 포기해야만 법이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권리 침해 예방과 실질적인 구제, 권익 보호라는 적극적인 법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하는 소극적 법이 아니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잃어버리는 것들의 가치는 숫자로 측정 불가하므로.

# 조례 시행의 의의와 예술인 인식전환

조인형(광주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 2021년 9월 24일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공포(2022년 9월 25일 시행)되었다. 광주광역시도 법 시행 이전인 2021년 12월에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민관협치 T/F>를 구성하고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0회에 걸친 회의를 거쳐 2023년 2월 23일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를 시행하게 되었다.
2. 이러한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동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의견을 담기 위한 노력 역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진다. 특히, 현장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도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진정성을 느껴진다.
3. 이로써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헌법 제 22조 제2항)”라는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선언한 헌법상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예술인 권리 보장법과 광주광역시의 해당 조례는 ① 표현의 자유, ② 성평등, ③ 예술인의 권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상황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본다.
4. 조례 시행 후 9개월이 경과되었다. 광주광역시는 제도시행 이전부터 <2023-2025 광주예술인 복지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예술인에 대한 행정적 관심을 정책으로 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하였고 현재도 조례에 따라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5.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와 지역예술인을 비롯한 예술단체 등이 제도의 순항을 위한 소통에 적극성을 보인다는 점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6.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조례와 관련하여 내실 제도시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일치시키고 그러한 주장이 있는 것 같다. 다만, 내실 있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짧은 시행기간, 제도 시행 이후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지 않았거나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이 자체가 ‘제도시행의 예방적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구체적인 요구가 제시되기 전 광주광역시 사전예방적 정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7. 제도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계의 역할은 무엇일까?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상황에서 서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를 벗어난 지금, 예비예술인도 권리보호대상에 포함된 제도적 상황에서 예술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발적 고민이 필요하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술활동에서 계약관계, 권력관계 등은 예술(생태)계 내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8. 다시 말하자면 “예술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변화의 방향에 대한 공유와 공감이 필요하다. 권력관계로 묶어 낼 수 있는 예술(생태)계 내의 모든 관계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접근방법의 하나로 “예술인 직무교육(가칭)”의 시행을 제안한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의무교육 등을 참고하여 예술계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적절한 교육 시수와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술인 직무교육”과 각종 예술지원사업의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지원 예술사업에서 예술인의 권리보호, 권력관계에서의 권한의 한계 등을 파악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예술지원사업에서의 불합리성이나 불공정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와 제도의 내용과 예술(생태)계 내의 인식 개선 등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9.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조례의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체육부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후,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등 신고 사건이 163건(2023년 8월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예술행정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노력이 필요하고 예술인 및 양대 예술인 단체, 문화기관 등의 제도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그 본질이 무엇일까?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

정두용(상상실현네트워크 공동대표 / (사)청년문화허브 감독)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그 본질이 무엇일까? 물론 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 이라고 한 마디로 표현하고 싶다.

현재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청년문화허브는 처음 설립된 2013년부터 ‘문화기획자 인큐베이터’를 주요 정체성 중 하나로 설정하고 청년문화기획학교를 운영해 왔다. 2021년부터 시의 지원을 받아 <호랭이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실무형 문화기획 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과정은 맛보기 수준의 아카데미나 진로탐색 과정이 아니라 실제 문화기획 일을 업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 그대로 전문학교를 지향하고 있다. 수료 후에는 참여자들이 실제로 취업, 창업, 프로젝트 활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스트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은 결국 ‘문화로 먹고 살기’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 1. 문화예술로 먹고 살기, 노오력만으로 가능할까?

청년문화허브를 처음 설립했던 초창기 몇 년, 다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위 잘 나간다는 문화예술인을 만날 때마다 항상 물어보던 질문이 있다.

“오랫동안 문화예술 활동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할 수 있었나요? 문화예술로 먹고 사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묻기를 몇 년. 모든 지역에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은 답을 듣고 내 나름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우선 답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10년 정도 꼭 참고 버티기!’ 문화로는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근근이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결혼 같은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 또는 배우자에게 경제생활을 의존하면서,

다른 일로 투잡을 하거나 알바 등을 해오면서 버텸었다는 거다. 문화예술인이 무슨 독립투사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단 말인가?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십 년 정도 계속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버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말은 정답에 가깝긴 하다. 10년 정도 일하다 보면 독자적인 콘텐츠, 네트워크, 경험&노하우 등이 생기면서 풍요롭진 않더라도 본인 앞가림은 할 수 있게 될 확률이 높더라.)

다른 하나는 ‘돈은 다른 일로 벌기’이다. 오래 버티고 있는 상당수가 부업을 따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카페, 식당, 옷가게 등을 하며 번 돈으로 문화 활동을 지속해 왔다는 거다. 이럴수가, 그렇다면 문화예술 활동을 오롯이 ‘직업’으로는 말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몇 년 전 이렇게 대략의 결론을 내렸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산업 특성이 강한 문화 분야(K-Pop·게임 같은 콘텐츠업, 축제 같은 행사대행업, 관광업 등)를 제외하고는 문화예술로 먹고 사는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한 방법’은 없다고. 내가 생각하는 문화예술로 먹고 살기의 일반성과 보편타당성은 ‘필요조건인 재능과 학습을 거친 사람이 하루 8시간 주 5일간 일하면 최소한의 생활수준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이다. 문화예술 일을 하면서도 원한다면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문화예술인(전업, 겸업 포함)들의 상황은 어떤가? 2021년 진행된 광주 예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연평균 예술소득은 451만원(월 37만 원)에 불과했고, 연평균 개인소득(예술활동 소득+예술 외 소득 전체)은 1430만원(월 119만원)에 불과했다. 참고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연 1496만원(월 124만원)이다. 예술활동 시작 후 6개월 이상 활동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예술인은 46.8%에 달했고, 가장 큰 이유는 ‘생계’가 54.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겸업예술인이 예술 외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주된 이유는 예술활동으로 얻는 낮은 소득(38.1%)과 예술활동으로 얻는 소득의 불규칙함(27.0%)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로 먹고 살기? 안타깝지만 ‘노오력’만으로는 아주 어려워 보인다. 재능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하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오늘도 위기의 파도 앞에서 고군분투 중이다. 광주가 ‘문화도시’가 되고 싶다면 충분한 재능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

한 문화예술인이 부자는 못 되더라도 ‘배고픈 삶’은 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사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직업 만족도도 아주 높은 편이다. 그런데 그건 내가 ‘결혼 전부터 애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지금도 없다’는 점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자녀 없이 부부가 맞벌이 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경제적 문제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삶을 선택했다면 지금처럼 문화예술 NGO 활동, 창작 활동을 중심에 두고 살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 같다. 어딘가 공공기관 등에 취직을 하려 했거나, 돈이 되는 행사 용역 중심의 업체를 운영했으리라. 그래서 청년문화허브를 설립한 이후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문화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이 되었다. 대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가 자연스럽게 나의 화두가 된 것이다.

## 2. 물고기 잡을 강과 바다를 만들자

### ▶ 사회적 기업처럼 사회적 일자리 : 지역문제해결형 문화예술 사회적 일자리

취업, 창업, 프리랜서 활동 등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문화예술로 먹고 살기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강과 바다 그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강과 바다가 없는데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나,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물고기 가져다주는 것이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는 몇 안 되는 우물과 저수지를 소수 몇 사람이 운 좋게(?) 선점해서 먹고 살 수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런데 중앙정부, 지자체의 문화예술 정책 대부분은 기존에 으레 해왔던 단편적인 지원 사업, 일회성의 행사성 사업, 수료 후 갈 곳 없는 인력양성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의 ‘지속가능성’을 디자인하지 못한다.

지속적이고, 자생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자유롭게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문화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문화예술인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명석이다. 그런 시스템과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체계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현장에서 솔하게 들은 문화예술인, 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정책과 지원은 이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난 확신한다. 관에서 먼저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작해 나가면 좋겠지만 그간 경험을 통해 단체장의 특별한 의지가 수반되지 않는 한 혹은 수반되더라도 관은 시스템적으로나 홀로 변화를 시작하기 쉽지 않다. 새가 양 날개로 날 수 있듯 민과 관에서 함

께 움직여야 한다. 관이 그럴 의지가 없다면 그럴 의지를 가지도록 민간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그럴 의지가 있다고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가야 한다.

### 3. 연대와 협업을 시작하자 +

#### ▶ 플러스 알파 :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현장에서 증명해 가기

개인이 먹고 살 수 있는 도량, 우물을 찾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다. 우선 본인이 먹고 사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하지만 그와 함께 ‘지속적으로’,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강과 바다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관점으로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디자인해야 한다. 이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법률의 개정, 새로운 시장(market) 개척, 새로운 지원사업 개발 등 한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강과 바다는 한 개인, 단체가 만들 수 없다. **민·관·정·산·학·연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계기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의 연대와 협업’을 우선 시작하는 일이다. **민간의 활발한 연대와 협업, 민관 거버넌스(협치) 이 두 가지가 문화예술인의 지속가능한 활동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내가 찾은 시작점이자 기본 전제이다.**

현재 문화예술계에서 지속 가능한 활동을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만 담보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박과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대하고 협업하며 민관산학연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문화 민주주의’가 따로 거창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문화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활동들이 갈수록 축소되고, 일부 사람과 단체들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전통적인 방식의 연대에 공감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등장, 각자도생의 시대에 연대 활동에까지 시간을 내기에는 지금 당장이 어려운 상황 등등 여러 이유가 있으리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모두 자기 자리에서 연대와 협업을 시작하고 참여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인들이라면 본인들의 필요와 열망을 표현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 만드시길 권한다. 버스킹 예술인 단체, 시각예술인 단체, 공연 예술인 단체, 20대 예술인 단체, 30대 예술인 단체, 동구 예술인 단체 등등 씨줄과 날줄처럼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이 구성되면 좋겠

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끼리 모여서 ‘단체들의 연대체’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기존에 단체들의 연대체로 활동하고 있는 예총, 민예총, 문화도시협의회, 상상실현네트워크처럼 말이다. 연대와 협업에 따른 여러 부수효과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일단 연대가 구성되어야 민관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 문화로 먹고 살기? 개인적인 재능과 노력 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하기’를 시작하면 좋겠다. 우리 함께 강과 바다를 꿈꿔보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될 수 있다.



# 저는 광주의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인입니다?

백승현(대동문화재단 출판미디어본부장)

얼마 전 필자가 속한 단체에서 어떤 문화예술 센터를 운영하는 위탁 사업에 응모한 적이 있다.

결과를 말하면 이 사업에 필자가 속한 단체가 선정됐다. 그런데 이 사업의 응모하면서 응모 단체에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에 놀랐다. 법인의 재산 현황과 인력 현황을 시시콜콜 증빙하지 않으면 결격 사유로 응모를 할 수 없다는 자치단체의 사업 담당자의 말에 마감 시간까지 서류들을 떼느라 사업계획서에 신경 쓰지 못했다.

그리고 알게 됐다. 자치단체마다 관련 지원사업 조례가 다 다르고,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와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현실을 모르는 사업 지원 공고가 됐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세부 시행지침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는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존중, 노동과 복지에서의 지위 보장, 성평등, 국가기관 등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라는 대의가 적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문화예술 단체가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국가기관과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 사업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 따르면 위예 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공모 사례는 불법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단체의 자산 상황이 미흡한 단체는 공모사업의 관문에서 평가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위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이미 예산부처에서 세워둔 예산만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주 내에서만 사업을 집행하고 그 이상의 주민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서 소소하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그 사업 내에서 운용되어야 해서 단체에 운영 이익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의 단체 직원은 이런 푸념을 하게 된다. 보조금을 집행해서 뭔가 단체에 실적이랄지 역량이랄지 하는 것들만 성과가 보이고 크게 사업을 집행하는 수고로움에 대한 물질적인 성과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다. 의욕이 많이 꺾이고 풍선 같았던 사업계획은 실제 실행 단계에 가보면 바람이 빠져 있다.

주민들과 지역문화단체나 예술단체와의 네트워크로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발적 예술문화 육성이라는 목표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사업 수행에 급급한 보조사업의 현실 속에서 짓눌리게 되는 것이다. 20년 이상 문화예술 단체에서 일한 지금의 내 위상은 무엇일까 회의가 드는 경험의 일단이었다.

게다가 자치단체는 사업 수행의 과정에 얼마나 많이 개입하는가? 규제와 개입은 또 다른 차별의 비민주성을 낳고 있고, 이것은 예술인 권익과 지위에 대한 위협의 심층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술인들의 차별과 비민주적 예술정책의 카르텔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위의 법률 제10조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조항의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포괄적 규정과 실제 현실의 괴리는 위의 언급들의 증거 사례다.

그러니 예술활동과 예술단체들의 활동이 영세해서 자율적인 항구성을 갖기가 힘들다는 것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과 조례로는 예술인들의 권리와 책임이 철저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는 실효적인 피해 구제나 예술인 지위와 역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규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예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 책임, 피해와 권익 증진을 위한 위원회와 지원센터 구축의 초석을 놓았고, 민관정 협의체의 활동이 보장되었다.

실효성 있는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예술인들과 예술단체들이 참여한 기구에서 실효적 조항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들이 이어져야 한다. ‘권익지원센터’나 ‘위원회’의 설치도 조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되어 현장에서 예술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집적되어야 한다.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례의 정신이 예술인들의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민주적 절차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의견을 제출해본다.

한 사람의 예술인들도 모든 문화예술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참여 속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민주적 예술문화의 정착을 바라는 예술인들이 한두 사람일까 싶다. 나는 자랑스러운 민주도시 광주의 문화예술인으로 직업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할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정착을 위한 민·관의 역할 및 과제

심재형(예비예술인)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이라 그런 것인지, 예비 예술인이라 광주 문화 예술계의 실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인지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생소합니다. 포럼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꽤 오래 모르고 지냈을 것 같습니다. 예술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비전공자 예비 예술인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꿈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결코 혼자서는 해소하지 못하는 의문을 남깁니다.

## 1. 대상자가 모르는 법

제도의 효력을 잘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술 활동 증명이 된 예술인일 텐데, 아직 증명할 만한 예술 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수상, 공식적인) 경력이 없는 예비 예술인은? 법이 필요해서 그때 알아보면 늦습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이 벌어진다면 정작 법이 가장 필요한 대상일 수 있지만 어쩌면 예비 예술인은 테두리 끝자락에 있어 보입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정말 필요한 대상일수록 법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술인보듬소통센터나 청년예술인지원센터의 홍보가 활발했으면 합니다. 자신이 대상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 파악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예술 활동 증명이 모호한 예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촘촘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2. 정말 가능할까?

과연 저는 보호받을 자격을 가진 대상에 적합할까요? 아직도 저는 예술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지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중에게, 예술계에서 주목받기 전까지는 철저히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행위라는 저의 인식 때문입니다. 지원 사업에 공모해 자신의 창작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만 보호받는 예술이라면, 홀로 서는 예술인들은 지원 사업에 도전하는 것만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일까 싶습니다. 하지만 수는 한정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계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다면 길은 더 좁아집니다.

### 3. 아직도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예술은 헝그리 정신에서 나온다’라는 의식은 아직 자리를 비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 생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아르바이트를 겸하는 예술인들이 있고, 그런 생활을 견디지 못해 예술을 포기한 이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선택한 길이기 법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지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문화예술이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은 분명하기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예술가에게 요구되는 헝그리 정신이 팽배한 사회에서 뚝뚝하게 쓰일 수 있을지 지원금의 효용이 궁금합니다.

예비 예술인인 저조차 의심이 든다면, 예술계 이외의 시민들은 제도의 효용을, 법의 존재 가치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대상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술의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과 동시에 예술계 관련인에게도 예술인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식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 4. 관의 과제

아직 정비할 것이 많은 제도인가 했는데, 알아보니 이미 많은 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늦게 알게 되어 받지 못한 교육이나 혜택도 여럿 보였습니다. 개인이 본인의 권리를 찾는 것이 우선이나, 예술과 동시에 생업을 겸하는 이들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여 관에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디어마이광주 아티스트 페이지같은 광주 내의 예술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관에서 광주 내의 예술인 권리보장법 대상자를 미리 파악하고 예술인, 예비 예술인, 비전공자 예비 예술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아는 이들의 목소리가 늘어나면 제도적으로 교정하는 데에는 힘이 들겠지만, 더 확실하게 발전하는 길을 열 것입니다.

### 5. 민이 할 수 있는 노력

법 제정을 위한 노력 이외에도 문화예술계를 이루는 개개인의 연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에서의 우선한 노력 이후에 예술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인 가까운 시민에게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알려야 합니다. 예술인 권리 보장의 의식 개선과 정보 공유, 도움이 자연스럽게 문화로 형성되길 기원합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는**

시민의 문화권 확대와 문화민주주의 실현, 시민이 주체가 되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7년 창립된 협의체 단체입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비매품>**

**2023년 2차 생통포럼(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포럼) 자료집**

지은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펴낸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박병주

펴낸일 · 2023. 11. 28.

인 쇄 ·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23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